**(유선)디지털마케팅 및 온라인매체 광고대행 계약 특수조건(안)**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하 “계약자”라 한다)와 000(이하 “계약 상대자”라 한다)는 디지털마케팅 및 온라인매체 등에 관한 광고대행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의 특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특수조건의 목적은 계약자의 디지털마케팅 및 온라인매체 광고, 프로모션 업무, 평판관리 등 홍보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기 위한 기준, 절차, 책임 등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다.

제2조 (업무 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시행하는 디지털마케팅 및 온라인매체 광고, 온라인이벤트 등 동조 제2항에 규정된 범위의 디지털마케팅 업무(이하 총칭하여 “디지털마케팅 및 온라인매체 광고 등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단,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자가 지정하는 범위의 업무에 한다.

② 동조 제1항에 의한 디지털마케팅 및 온라인매체 광고 등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자의 디지털마케팅, 온라인매체 광고 전분야

2. 계약자가 시행하는 디지털마케팅 및 온라인매체 광고 등 전 분야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전략

의 종합기획

3. 계약자가 시행하는 온라인 매체 및 온라인 판촉 활동에 관한 기획, 제작, 매체대행 및 집행

관리

4. 디지털마케팅의 기획, 제작 및 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조사 및 분석

5. 경쟁사 디지털마케팅 전략 및 디지털마케팅 동향 등 조사와 분석

6. 계약자가 요청하는 매체확보를 위한 섭외활동

7. (온라인)이벤트 시행 및 판촉물 제작 등 판촉지원

8. 평판/바이럴 관리 솔루션 운영 및 대응 업무 일체

9. 기타 계약자가 요청하는 디지털마케팅 관련업무 일체

③ 디지털마케팅 및 온라인매체 광고 등 업무 수행의 품질 향상 등의 목적으로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분야에 대하여 계약자는 필요에 따라서 업무의 일부를 지정 또는 경쟁을 통해 제3의 계약상대자가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광고 매체 집행을 위한 기획전(랜딩 페이지), 소재(이미지 및 영상 포함) 등 매체 집행을 위한 제작비 일체는 협의된 매체 수수료(마크업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단, 소재 제작 시 별도 출연자 섭외 비용, 외주 제작을 통한 제작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광고집행대금)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01일 ~ 2026년 11월 30일로 하며, 양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호 합의 하에 서면으로써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디지털마케팅 및 온라인매체 광고 등 업무 수행에 따른 매체비, 제작비, 용역비 등 일체의 대금(이하 “광고집행대금”이라 한다)은 월별로 산정하여 매 월 지급한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기간동안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월별 광고집행대금의 총액은 금 오십억원(\ 5,000,000,000/ 부가세 별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업무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디지털마케팅 및 온라인매체 광고 등 업무 활동에 관한 목표, 전략, 계획 및 광고물 제작과 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계약자에게 보고 후,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디지털마케팅 및 온라인매체 광고 등 업무 활동이 경쟁사와 비교하여 항상 우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정기적으로 성과 분석보고서 및 발전적인 디지털마케팅 전략을 계약자에게 보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직접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자와 사전 협의 후 그 승인을 얻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모든 사항의 책임 귀속과 그 비용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제5조 (디지털마케팅 및 온라인광고매체 선정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광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매체를 선정하여 계약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상호 협조)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특수조건 제2조의 디지털마케팅 및 온라인매체 광고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상호 제공하고 서로 최대한 협조한다.

제7조 (담당자 지명 및 전담인력 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디지털마케팅 및 온라인매체 광고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와 협의한 기간 내에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명단을 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조 제1항의 절차를 거쳐 구성•지정된 계약상대자의 전담팀 구성인력 또는 담당자를 계약자와 사전 협의 없이 교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동조 제1항의 절차를 거쳐 구성•지정된 계약상대자의 전담팀 구성인력 또는 담당자가 계약자의 프로젝트 외 다른 프로젝트를 병행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④ 계약자는 동조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지정된 계약상대자의 전담팀 구성인력 또는 담당자가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 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하고, 계약상대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본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의 월별 광고집행대금을 매월 말일까지의 광고집행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말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해당 월의 광고집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대가산정기준, 지급방법 및 결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자의 회계규정 및 관련지침을 따르며, 그 변경 시에는 양 당사자 간의 별도 사전 서면 합의로 변경하기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솔루션 사용, 운영 실비 등 해당 월의 광고집행대금에 대한 증빙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저작권 등 법적 소유권)

① 계약상대자의 디지털마케팅 및 온라인매체 광고 등 업무 수행에 따른 광고제작물, 판촉물, 기획서, 조사보고서 기타 창작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법적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다. 다만,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라이선스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한 디지털마케팅 및 온라인매체 광고 등 업무 수행 시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특허권 등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시에는 그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지고 계약자를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제반 절차에 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문제 발생에 관한 귀책사유가 명백히 계약자에게 있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월 1일까지 월간 리포트 및 전월 제작된 디지털마케팅 및 온라인매체 광고물 등 모든 생산물을 보관이 용이한 형태로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2조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디지털마케팅 및 온라인매체 광고 등 업무 수행 관련 계획 및 전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수사항 및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디지털마케팅 및 온라인매체 광고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시의성 있는 디지털마케팅 및 온라인매체 광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일 지체로 인해 디지털마케팅 및 온라인매체 광고 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내용 및 그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계약자의 영업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를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은 물론, 그 만료 후에도 계약자의 허가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특수조건 제12조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중개인(브로커)을 통한 가입자 모집 행위를 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모집한 가입자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중개인(브로커)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계약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이행을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불성실 이행을 하여 계약자가 재차 이행을 요구하였음에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등으로 시정 통보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시정 통보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 위반 사항 또는 계약 불성실 이행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필요 시 계약상대자의 매출 기여도, 디지털마케팅 효과, 제작물의 납기일 준수여부, 서비스 제공의 품질 수준 등에 관련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계약상대자의 디지털마케팅 대행 능력 또는 온라인광고효과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 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자의 신용 및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서면 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그 상대방에게 주요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조세의 체납절차, 강제집행, 파산•회생절차개시, 해산(청산) 등 지급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부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면허의 취소(업무정지 등 포함) 또는 반납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없이 계약자가 본 계약의 일부(일부 매체에 대한 광고집행 중단 등) 또는 전부를 해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중 어느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본 계약의 위반 및 불성실 이행을 하여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사유자는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4조에 따라 광고집행대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해당 비용과 관련된 제3자에 대한 모든 비용 지급(부담)으로부터 면책된다.

③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테러, 법규 변경, 정부의 개입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쌍방의 업무내용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에는 이를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협의 후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13조 (성과 연동 포상비 제도)

① 계약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성과 연동 포상비 제도는 계약상대자가 매월 계약자로부터 전달받은 목표 및 가입자 유치 실적 결과에 의거하여 양자 간 협의된 기준에 따라 연동된 성과 포상비를 매월 정산금액에 반영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매월 계약자로부터 전달 받은 목표 기준을 달성했을 경우 매월 100만원의 성과 포상비를 제공하며, 포상비는 협의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다.

③ 목표 기준 달성 여부는 유선 대행사와 무선 대행사의 경쟁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매월 성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두 업체 중 더 높은 점수를 달성한 업체에 포상비를 지급한다.

④ 점수 환산은 아래의 [표 1]의 예시와 같이 인입, 전환단가CPA, 목표CPA 달성 점수 등 기준으로 하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확정 후 정산금액에 적용한다.

[표 1] 유무선 성과 점수 기준(예시)

|  |  |  |  |  |  |
| --- | --- | --- | --- | --- | --- |
| **※ 총점 = 인입 증감\*0.4 + CPA 증감\*0.4 + CPA 달성률\*0.2** | | | | | |
| **인입 증감(전월 대비)** | | **CPA 증감(전월 대비)** | | **CPA 달성률(목표)** | **총계** |
| **내부** | **리포트** | **내부** | **리포트** |
| 10% | 30% | 10% | 30% | 20% | **100%** |

⑤ 본 계약의 특수조건 제 13조의 내용은 양자 간 협의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다.